

## 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### 침례교회 담임자(감독)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

[대상결정 :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3. 선고 2017라21220 결정]

서울고등법원(제25민사부)은 2018년 3월 23일 모 침례교회 개혁세력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감독이었던 K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(2017라21220)에서,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K목사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므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

제1심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6일 K목사가 2013년 1월 1일 감독직에서 사임한 것은 후임감독의 사임 시 다시 감독으로 복귀하는 조건이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(2017카합20212).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채권자 측을 추가로 대리하게 된 지평 노동팀은 사임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, K목사는 2013년 확정적으로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,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.

한편 K목사는 1969년 이 사건 침례교회를 개척하였으나,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고, 최근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

#### [담당 변호사]



권창영 변호사



이광선 변호사



김하영 변호사